

TESD 안전진단 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주)삼우통상
삼우이엔지(주)



존재가치, 핵심가치, 미래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기업

TESD 시설물 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 안전진단 전문기관

- ☑ 교량 ☑ 터널 ☑ 건축물 ☑ 옹벽
- ☑ 절토사면 ☑ 수리시설 ☑ 항만시설 ☑ 공동구



최상의 서비스와 신뢰를 약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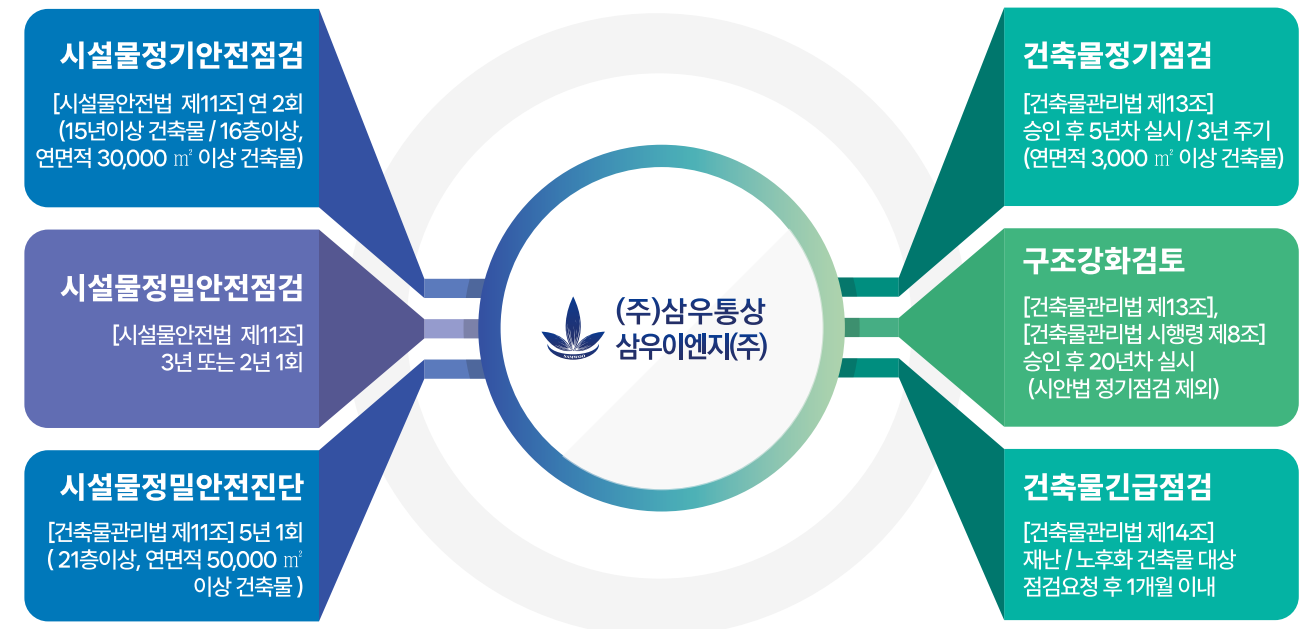
시설물 안전법

-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안전법 제13조] 정기안전점검

건축물 관리법

-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정기점검
- [건축물관리법 제3조] 정기점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정기점검

건축물 관리법 정기안전점검 주요 항목



※ 건축물 면적 및 사용기간에 따라 점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삼우통상 TESD 안전진단 전문기관
대표번호 _ 1644-640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73(주안동)
삼우빌딩 2층
Tel _ 032)235-0077
Fax _ 032)867-8083
Homepage _ <https://tesd.35com.com>
Email _ eng@35com.com

삼우이엔지(주) TESD 건축/토목 안전진단 전문기관
대표번호 _ 1566-7943

시흥주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7번길 6-2 301호(장현동 영재빌딩)
Tel _ 031)435-3737
Fax _ 031)315-3530
지사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십곡동)

Total Engineering Solution of Demand 토목/건축 안전진단 전문기관

TESD는 정부공인인증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고도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신뢰성, 신속성, 정확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진단기관입니다.

토목/건축 엔지니어링은 각 시설물 인프라와 상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주기적인 유지 관리로 에너지 절약과 안전성을 비롯한 시설물의 가치를 향상 시킵니다.



고객과의
신뢰성

+



문제해결의
신속성

+



정밀진단을 통한
정확성

TESD는 최고의 기술진과 함께 철저한 프로젝트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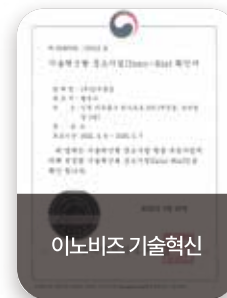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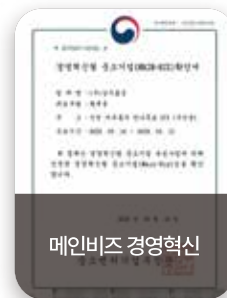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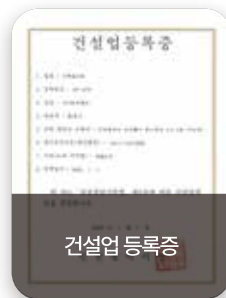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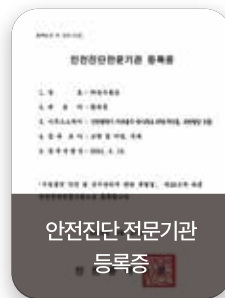
업무영역

신축건축물의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기존시설물의 정기, 정밀점검 및 진단

노후시설물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보강설계

주요 특허 및 인증서



준공 실적 및 용역 수주

- 내진성능평가 부산남부발전소
- 건축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
- 건축 인천 검단신도시
- 건축 SK바이오사이언스
- 토목 인천발KTX 증축
- 토목 문경시 스마트 인프라



Building Safety Examination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토목/건축 안전점검 전문기관



건축물 유지·관리를 통해 건물의 생애주기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화재사고, 붕괴사고 등 건물 내부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TESD 건축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적용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은 목적물의 구조체 안전과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가시설물 및 건설 장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구조체 안전점검

교량·터널·건축물·옹벽·절토사면·공동구
·구조체공사의 공정시기별로 2회 ~ 5회 점검을 수행함

가시설물 안전점검

구조안전성검토가 필요한 현장가설구조물,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 101조의 2
·법적 점검대상인 현장가설물체에 대하여 2회이상 점검을 수행함

건설장비 안전점검

항타기·항발기·천공기·타워크레인
·법적 점검대상인 건설현장장비에 대하여 2회이상 점검을 수행함

인접건물 사전·후 조사

건설현장의 인접시설물
·건설현장에 인접한 시설물중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조사와
사후 계측 조사를 수행함

시설물 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제 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안전법 제 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1,2,3종 시설물: 반기 1회(안전등급에 따라 차등실시), 육안점검

정밀안전점검

1,2종 건축물: 3년에 1회(안전등급에 따라 차등실시), 육안점검+노후도평가
1,2종 건축물 외: 2년에 1회(안전등급에 따라 차등실시), 육안점검+노후도평가

정밀안전진단

1종 시설물: 5년에 1회(안전등급에 따라 차등실시) 육안점검+노후도평가+구조내력평가

[시설물안전법 제 40조] 시설물의 성능평가

성능평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3에 해당되는 시설물: 5년에 1회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위하여 요구되는 성능(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을 종합평가

하자만료점검

하자란 공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

- ★ 공동주택 관리법
- ★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4_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2년차 마감공사

미장·수장·도장·도배·타일·내부석·옥내가구·주방가구·가전제품공사

3년차 마감공사

옥외급수·냉난방·공기조화설비·급배수·가스설비·수장목·창호·조경·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정보통신·홈네트워크·소방설비·단열·잡철공사

5년차 마감공사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

10년차 마감공사

기초·지정공사